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저널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 4/ 23 통권 1724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공익법인 주요 Q&A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실무(1)
- 업무무관 부동산의 세무상 처리 방법
- 공익법인 주요 Q&A ①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도 지속 완화
- 국세청, 대한해협 너머 체납 세금 받아낸다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폐업한 사업장과 관련되는 퇴직금 지급액을 현재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과와 稅計·經營 戰略

<매출세액에 대응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적격 연관성>

구분정점항목	매입세액공제 적격요인	불공제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교부적법, 합계표의 적법	적법세금계산서 없거나, 합계표 미제출
사업과 직접 관련성	부가세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지출, 구입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손익·자본거래	손익거래(수익대응비용 계산거래) 판매촉진할동수수료 등	자본거래(자기자본 관련) 자본조달 관련 수수료 등
승용자동차의 통제	경차, 9인승 차, 운수업의 자동차, 트럭 등	일반적 승용차(소·중·대형)
업무추진비 등	비용인정, 손금산입되는 판매촉진 비용, 불특정 다수를 위한 광고홍보용 지출 등	소득세·법인세상 비용 불산입되는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면세·과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토지 관련	건축물의 신축·증축·철거 등	토지 취득·가치증진, 형질변경 등
사업자등록일	공급시기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부터 20일 내 사업자 등록하면 해당기간 전부 매입세액공제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24호 / 주간 17호

2025. 4. 23. (수)

· 발 행 인: 이윤선
 · 제 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매출세액에 대응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적격 연관성	표지
CEO의 경영 산책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실무(1)	2
세무·회계 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임원퇴직금지규정 개정 - 세금계산서 발행오류에 대한 후속처리 - 자회사와 원재로 공동구매 후 수출시	5 6
눈에 맞는 절세 미인	업무무관 부동산의 세무상 처리 방법	7
매일 절세 재무 요점	- 올해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반도체 추경 내용	9 10
직장인 Survival	효율적인 업무보고서 작성 TIP	11
최신 판례 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소독-275, 2024.06.25) - 내국법인이 보험용역의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어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나 공급시기 이후 거래상대방의 요구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법인-678, 2024.11.21)	12 13
세정 뉴스와 해설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올해도 연장... 지방 기업엔 세금 감면	14
마케팅 Tax consulting	폐업한 사업장과 관련되는 퇴직금 지급액을 현재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12
세무정보	- 공익법인 주요 Q&A ①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지속 완화 - 국세청, 대한해협 너머 체납 세금 받아낸다	15 45 47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4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실무(1)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최근 홈플러스의 기습 회생 신청으로 금융시장 내 혼란이 가중되면서 파장이 사모펀드운용사(PEF) 전반의 투명성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일반 대중의 기업의 목적에 대한 이해의 초점이 변화하고 있다. 종전의 단순한 기업의 성장을 위한 이익창출에서 장기적인 가치창출과 기업과 상호 의존적인 경제 및 환경, 사회적인 영향((impact)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종업원, 임대매장 및 납품업체,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사모펀드 경영에 대한 불신 등을 초래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종합적인 검사 및 조사에 들어가가고 있다.

위와 같은 변화는 기업의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와 전략에 대한 역할과 의미에 중요한 함의를 준다. 기업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경제 및 환경, 사회를 모두 포함한)을 기업의 핵심적 비즈니스에 통합하여 기업 목적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이를 전략과 운영에 내재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핵심적 원칙은 기업의 의사결정이 관계 법규에 따라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따라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것이다. 기업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사회 영향에 대한 이해(interest)가 점증하고 있으며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을 다스리는 구조를 말하며 경영진(대주주 포함)-소액주주-채권자-종업원 등 기업 이해당사자들의 역학관계를 총칭하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는 넓게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협의로는 기업경영자가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통제하는 체계를 기업지배구조로 보기도 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에서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며 각국 경제의 장기적 안정 성장의 기본요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경제와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로 발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6년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합의했으며 이후 국제사회의 논의를 거쳐 1999년에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이 원칙은 정부간 주도에 의하여 처음 작성된 지배구조에 관한 원칙으로서, 구속력은 없으나 각국 정부와 민간부문이 기준(벤치마크)으로서 사용할 것을 기대하였다. 이는 바람직스러운 지배구조의 유일한 모델은 아니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공통되는 것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전제에서, ① 주주의 권리 보호, ② 모든 주주의 공정한 대우, ③ 이해관계자의 권리의 인식과 지배구조에의 참가, ④ 정보공개와 투명성의 확보, ⑤ 이사회 책임이라고 하는 5개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은 1999년 제정된 이후 2004년 1차 개정, 2015년 2차 개정이 있었는데, 8년 만인 2023년 3차 개정본(이하 “개정 기업지배구조원칙”)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은 한국ESG기준원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한국 스투어십코드,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원칙에 반영되어 있으며, 국내외 ESG 평가기준 작성시에도 중요하게 참고되고 있다. 또한 의결권 행사 등 적극적으로 주주참여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에게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은 중요한 행동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원칙은 정책입안자들이 경제적 효율성, 지속가능한 성장 및 재무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규제적 및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경영진, 이사회, 주주, 이해관계자 간의 일련의 관계(a set of relationship)를 다룬다.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이 지향하는 목표의 설정과 성취,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과 구조, 수단을 제공한다. 잘 설계된 기업지배구조 정책은 광범위한 경제적 목적과 공공 효익의 달성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 OECD, 2024.3.19 검색.

첫째, 기업들이 특히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업의 혁신, 생산성, 그리고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고, 경제적 역동성을 확산시킨다. 특히 오늘날 세계화된 자본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기업들과 국가들이 세계 자본시장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본을 끌어들이려면 기업의 기업지배구조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둘째, 잘 설계된 기업지배구조 정책은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사회 구성원과 임원의 주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진하는

공식적인 절차와 구조는 시장에서 신뢰를 형성하여 자본시장에의 접근가능성을 높여준다.

셋째, 기업지배구조 정책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지원하며, 결과적으로 확대된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에 기여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점점 더 광범위한 경제, 환경 및 사회적 도전에 의해 야기되는 재무적 위험과 기회, 위험에 대한 기업의 회복력과 관리를 기업의 재무성과 보고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프레임워크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되며 비교가능한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공개를 포함하고 있다.

넷째, 최근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원칙뿐만 아니라 환경, 반부패 또는 윤리적 문제와 같은 요소들뿐만 아니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국제 비즈니스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의 뇌물방지에 관한 협약, UN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침, ILO 기본원칙 및 직장에서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포함한 여러 국제표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의 글로벌 복합위기 경영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 중소기업도 기업지배구조 원칙에 관심을 갖고 건전한 기업경영의 틀을 재정립할 시점이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

Q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사정에 따라 임원퇴직금의 배수를 축소하고자 합니다.
임원 퇴직금의 경우 수령을 포기할 경우에도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예규가 있던데,
지급 배수를 축소하면 상기 포기할 경우로 볼 수 있나요?

A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확정된 퇴직급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시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유권해석이 나왔으나, 귀사경우처럼 실제 임원이 아직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지급 배수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령포기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오류에 대한 후속처리

Q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오류에 대한 후속처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황>

1. 2024년 9~10월경 당사의 공급업체 중에서 당사 구매팀과 협의없이 단가인상요구 후 해당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2. 당사는 월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업체로,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시에 완료하였습니다.
3. 2024년 12월 현재 "9~10월경 구매팀과 협의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취소 또는 수정을 요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1.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세금계산서 취소 또는 수정 어떠한 방법으로 후속처리를 해야는지
2. 취소 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 시 어떤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3. 취소 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 시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를 반영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1.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신고가 완료된 경우로, 추후 공급가액을 변경하기로 협의가 되면 귀사의 의견대로 협의 완료시점을 공급일로 하여 증감된 금액만큼 수정

- ≡ 세금계산서 발급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 2. 정상적 절차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해당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공급시기에 신고 반영하시면 되며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자회사와 원재료 공동구매후 수출시

Q 대만,중국에 있는 자회사 및 자매회사와 당사의 원재료를 공동구매하여 당사가 원재료 대금을 미리 지급(대금 결제 조건은 원재료 선적후 1개월이내 지급)하고 한달 후에 자회사로부터 원재료 대금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거래를 할 예정입니다. (거래절차)

1. 당사가 일본에서 원재료를 구매하고, 수입 통관 후 대만 및 중국 자회사에 수출할 예정
2. 자회사에 수출시 수출가액은 원재료를 매입한 금액 그대로 수출(JPY금액에 환율 적용 USD 로 지급 받음)

질의사항)

1. 공동구매후 자회사에 수출시 수출가액을 margin을 붙이지 않고 매입 금액 그대로 수출할 경우 어떤 tax issue가 있을까요?
2. 만약 margin을 붙인다면 통상적으로 몇 %가 적정한가요? TP 문제이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적정 비율은 어느정도인가요?
3. 수입통관시 발생하는 VAT에 대해서 당사가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4. 기타 상기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국제거래 tax issue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1. 계약서 등에 의해 공동구매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마진없이 구매가액 그대로 수출하더라도 세무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나, 공동구매가 아닌 귀사가 매입후 재판매하는 거래라면 국외특수 관계자간 거래이므로 정상가격(시가)으로 거래해야 됩니다.

2. 통상적 마진의 적정성은 저희가 알려드릴 내용이 아니고 정상가격산출방법은 국조법 제5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모든 물품을 귀사가 구매하는 경우라면 전체금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공동구매의 경우라면 귀사구입분에 한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업무무관 부동산의 세무상 처리 방법

상담실 백종훈 차장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비용, 지급이자는 물론 유지관리비 등도 손금불산입된다.

이렇게 비업무용 자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이유는 자산의 취득 등을 위한 타인자본의 유입을 막아 법인의 재무구조를 건전화시킴과 동시에 부동산 투기거래를 방지하고 기업자금을 투기자금에서 생산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어떤 경우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어 손금불산입이 되는지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유예기간동안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데 유예기간내에는 비업무용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유예기간이란 법인이 부동산을 사자마자 즉시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까지의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을 법에서 인정하여준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일반부동산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 건축물·시설물 신축용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 공장신축용 토지의 경우는 당초 사업계획서상 공장건설계획기간 전부를 각각의 유예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동산별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등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을 소급적용한다.

유예기간내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중 유예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되지 않지만, 유예기간내라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의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업무무관 자산으로 판정하며, 소급된 취득일부터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경비비용처리액·유지비·수선비 및 관리비 등이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과거 유예기간 동안의 손금처리사항을 손금불산입하여 과거 법인세 신고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 서이46012-11749, 2003. 10. 09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용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동 부지 중 일부를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특별한 사유에 의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업무용으로 인정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주에 속한다 하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당해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등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법상 또는 행정지도에 의한 건축허가제한, 문화재보호구역내 부동산, 사도법상의 도로, 소송계류중 합병·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매각의 어려움 등 기타의 불가피하거나 경제형편상 어쩔 수 없는 사유 등을 충족하는 경우는 당해 부동산의 보유 현황이나 내용이 어떻다 하더라도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는다.

♣ 서이-1804, 2005. 11. 09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도시계획법」(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용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보유중인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질의관련 토지를 취득한 이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이 되었는지, 질의와 같이 15년간 관련법률에 의하여 규제가 적용되었는지는 취득내용 및 관련법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올해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직전연도 매출 1500억원 이하, 3년 이상 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 수출기업 세정 지원 대상 사업자
-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 사업자
-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내역

2020년 2월 28일	민생·경제 종합대책 통해 첫 발표
2020년 3월 23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021년 1월 1일	1차 공제기간 연장(2021년 6월 말까지)
2021년 3월 16일	2차 공제기간 연장(2021년 12월 말까지)
2021년 12월 28일	3차 공제기간 연장(2022년 12월 말까지)
2022년 12월 31일	4차 공제기간 연장(2023년 12월 말까지)
2023년 12월 31일	5차 공제기간 연장(2024년 12월 말까지)
2024년 12월 31일	6차 공제기간 연장(2025년 12월 말까지)



반도체 추경 내용

정책	추경 예산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 시설 지원 구축	1170억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국비 지원	626억
국가 첨단 전략산업 소부장 투자 보조금	700억
팹리스 기업 첨단 장비 공동 이용 지원	23억
AI 반도체 실증 지원	400억
AI 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	54억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	10억
산업은행 출자	2000억
<전체>	4983억



소득세 물가연동제 운용하는 주요국

	물가연동지수	물가연동주기	특징
미국	생계비지수 (Cost of living index)	1년	물가상승분 2024년 5.4%, 2023년 7.1% 반영
캐나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	1년	1986년~1999년까지 물가상승률 3% 초과시에만 조정 2024년 4.7%, 2023년 6.3% 반
영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1년 원칙 (2025~2026년까지 연동 중단)	의회 예산안 심의 시 연동여부 결정 최고세율 구간 물가 연동 ×
프랑스	소비자 물가지수 (CPI, 담배 제외)	1년	물가 상승분 2024년 4.8%, 2023년 5.4% 반영
뉴질랜드	소비자 물가지수 (CPI)	CPI 누적 증가율 5% 이상 시 조정	과세표준 기준 금액은 물가연동제 도입 ×



효율적인 업무보고서 작성 TIP

1. 목적을 명확히 하라

보고서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정보 전달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문서다. 누가, 왜, 어떤 결정을 위해 이 보고서를 볼지를 먼저 생각하면 구조와 내용이 달라진다. 보고 대상에 따라 톤과 깊이도 달라져야 한다.

2. 핵심을 앞에, 세부는 뒤에

읽는 사람은 바쁘다. 결과와 요점을 가장 먼저 배치하고, 배경이나 과정은 뒷부분에 정리하자. 특히 결론과 다음 액션 아이템은 두괄식으로 써야 눈에 잘 띈다.

3. 숫자와 근거로 설득하라

주관적인 표현보다는 수치, 표, 그래프 등 구체적인 데이터로 신뢰를 높인다. 예: "많은 고객이 이탈함" → "3월 대비 이탈률 12% 증가(15명 중 5명)."

4. 단순하고 명확하게

길고 복잡한 문장보다는 짧고 분명한 문장을 사용하자. 중복된 단어나 불필요한 수식어는 줄이고, 전문용어는 필요한 경우에만 설명을 덧붙이자.

5. 시각적으로 정돈하라

제목, 소제목, 번호 매기기를 활용해 시각적인 흐름을 만들면 가독성이 좋아진다. 문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내용의 신뢰도도 덩달아 올라간다.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폐업한 사업장과 관련되는 퇴직금 지급액을
현재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고, 폐업
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
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소득-275, 2024.06.25

질 의

- 질의인은 과거 AAA(이하 "폐업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 현재 BBB(이하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임
- 폐업 사업장 운영 시 '13년부터 '20년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소송이 '20년부터 '23년까지 진행되었고 '23.0.0. 확정되어 '23.0.0. 퇴직금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 '20년부터 '21년 근무한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이 '23.0.0. 확정되어 '23.0.0. 근로자에게 초과근무수당 및 이자를 지급하였음

질의

- 폐업한 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을 현재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460, 2024.08.22

질 의

- 임차인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되는 골재채취장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700, 2009.0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700, 2009.02.27.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벤처기업의 주권 등을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현물 분배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됨

서면법규재산-614, 2024.11.15

■ 질 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A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이하 "A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B벤처투자조합을 결성
- '18.1월 B벤처투자조합은 C사에 투자하여 신주 취득
- '21.12월 B벤처투자조합은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전원 동의를 통해 투자조합이 보유 중이던 C사 주식 중 일부를 업무집행조합원인 A사에 현물 분배
- A사는 C사 주식을 양도할 예정

질의

-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업무집행사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현물로 분배 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64, 2024.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64, 2024.10.25.

[질의]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업무집행사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현물로 분배 받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1안)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2안)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내국법인이 보험용역의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어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나 공급시기 이후 거래상대방의 요구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법인-678, 2024.11.21

■ 질 의

- 질의법인은 보험업 영위법인으로 '24.4월 ○○시체육회와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단체안심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용역 대가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였음
 - ○○시체육회는 상기 보험계약 체결 시 계산서 발급 요구가 없었으며 약 4개월 경과 후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여 계산서를 발급함

질의

- 보험업 영위 법인이 보험용역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공급시기 이후 거래상대방의 계산서 발급 요구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보험용역을 공급한 내국법인이 보험용역의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어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나 공급시기 이후 거래상대방의 요구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공정시장가액비율 개정안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 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동 조치로 인해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2천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분리과세 대상 추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89개) 소재 기업 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년~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부담이 완화된다.

이는 조세전문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책적 보호·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분리과세 적용 후 일몰 도래 시, 지원효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2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5월까지 마무리해 올

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이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일 국세청장, 고액채납자 징수 협력 강화… 이중과세 합의 활성화

한일 국세청이 이중과세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조세정의 차원에서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청장 오쿠 다쓰오)과 제2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양국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주요 전략 ▲고액채납자 대응 ▲신종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했다.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양국 진출 기업 간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라 고액채납자에 대해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인다.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한국의 일본과의 교역액은 775.1억 달러 규모로 한국의 수입 3위 국가다.

이날 강 국세청장은 한국의 ‘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했다.

또한, 한국의 ‘고액 상속 채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세청 측은 활발한 세정의교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공익법인 Q&A ①

- 국세청, 2025. 4

공익법인의 주요신고의무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산서류 등 공시 바로가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다만 종교단체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결산서류 등 표준공시의무 대상임)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인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음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 바로가기
 -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주식기준 초과보유* 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하여 출연·취득하였거나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 재산가액의 30%(5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바로가기
 - 기부금단체(종교단체 제외)는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각각 공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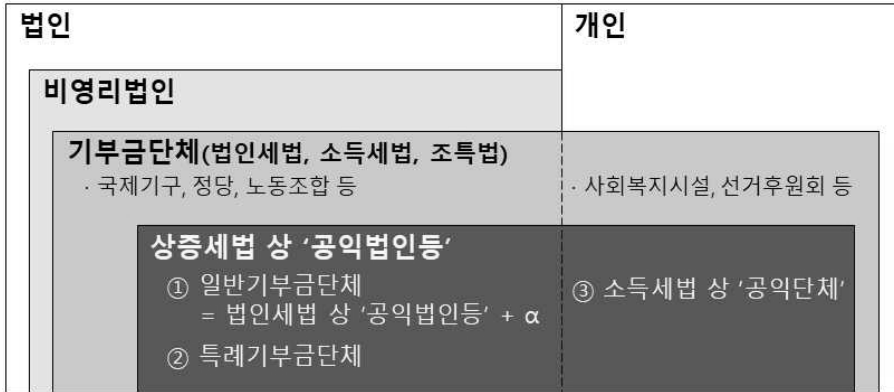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기초자료 제출 바로가기
 -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중 감사인 지정대상*인 경우,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지정기준일 이전 연속하는 4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1 공익법인의 개념

Q1 세법상 '공익법인등'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아래 1호부터 7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등'으로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이에 해당하며, 그밖에 종교단체·공익단체(소득령 §80①(5)) 등 법인이 아닌 단체 등도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의한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Q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2020. 12. 31.까지 공익법인이며, 2021년부터는 기획재정부 지정·고시를 받아야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전에 출연받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아니더라도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Q3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공익법인등은 법인세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단체이며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 손금 산입, 필요경비 산입의 혜택이 있습니다. 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거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2 공익법인과 세금

Q1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등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국가 등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세법상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과다하게 출연받거나 공익사업을 지원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에 증여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제48조 제1항

Q2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산을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경우, 공익법인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1. 주식 등의 보유·취득의 제한

공익법인등의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등의 취득·보유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공익법인등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의 총 발행주식수의 5%* 이내로 보유할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단, 아래의 ①+② 충족시 10%, ①+②+③ 충족시 20%까지 한도 비율 상향

-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공익법인
-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구. 성실공익법인)
- ③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한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 공익법인

▷ 위 한도비율을 초과해서 출연받는(유상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각 호(유상 취득하는 경우는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2)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계열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 보유주식가액을 공익법인 총재산가액의 30%(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의무이행 시 50%) 이내로 보유할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30%(50%) 초과 보유 시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의 시가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과 같은

법 제48조 제1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 등은 초과 보유해도 가산세 부과 대상 아님

2. 기타 공익사업의 지원 취지에 따른 사후관리

공익법인등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는 대신에 공익사업의 지원 취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익법인등은 출연재산,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운용소득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 제한,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등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제48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3항, 제14항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2020.12.22.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3조

Q3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인이 횡령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이사장 또는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출연자 등과 친족관계가 없는 사용인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횡령하거나 출연재산을 도난당한 경우로서 그 횡령금 및 도난물의 회수를 위하여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9항
상증, 서일46014-11519(2003.10.24.)

Q4

건물을 기부받아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는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출연받은 건물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임대료는 운용소득으로서 해당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턴 1년 내에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미달 사용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Q5

2018년에 출연받은 부동산을 2022년 이후 공익목적 사용을 중단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용 중단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2018년에 출연받은 부동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다가 2022년 이후 공익목적사용을 중단하면 그 사용하지 아니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7654호 부칙 제3조
상속증여세과-120(2013.05.14.), 재산세과-360(2010.06.04.)

Q6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에 부동산 증여 시 과세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재산-161(2011.3.30.)

Q7

기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지출해도 되나요?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Q8

공익법인 등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외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①당해 수익사업에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더불어 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청산소득과 미환류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3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Q1

세법개정으로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된 경우, 공익법인등으로서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출연재산을 전부 사용함으로써 잔여 출연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9(2021.09.29.), 공익중소법인지원팀-849(2022.09.07.)

Q2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바목으로 지정·고시된 공익법인등인 경우, 공익법인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정추천을 받아 기재부 지정·고시된 공익법인등이라면 세법상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Q3

공익법인등의 지점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공익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해당 지점의 본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제50조에서 제51조까지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 공익중소법인지원팀-281(2021.06.07.), 공익법인회계기준 제3조

Q4

회비·후원금 3억 미만인 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보조금 사업만 있는데 공익법인 신고 의무가 있나요?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후원금 등이 3억 미만이라도 공익법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5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

Q1 출연재산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따라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을 말하되, 부동산 및 주식 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Q2 출연재산에 보조금, 후원금, 회비 등도 모두 포함되나요?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으나, 후원금·기부금 등은 포함됩니다.

Q3 출연재산에 공모지원금도 들어가나요?

해당 공모지원금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성격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타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출연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모지원금의 지급 주체 및 그 성격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Q4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만 있는 공익법인등도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국가·지자체 D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만 있고, 별도의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공익법인등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 재삼46014-645(1999.04.01.)

Q5

현금만 있는 종교단체는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불특정 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현금만 있는 종교단체인 경우,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식이나 부동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Q6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연도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은 있지만, 제출대상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그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이 있고(최초 설립 시 출연받은 기본재산 등 포함), 해당 재산에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 운용소득 등이 발생하거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출연재산보고서 서식에 작성할 내용이 있는 공익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Q7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출연재산 등에 관한 보고서 등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무 업무 가이드 맵(Map) > 공익법인 종합안내 > 신고/보고 >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Q8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과세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

Q9

전년도 출연재산보고서에서 누락된 기부금(후원금)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년도 출연재산보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10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수익사업은 공익법인등의 금융(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매각), 기타수익사업을 말합니다. 이때 기타수익사업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제5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다.

반면, 고유목적사업은 위 수익사업 외의 것으로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유목적사업을 통한 수입의 예로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입 등이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6조 제5항,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Q11

문화예술 전시사업을 공익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요?

문화예술 전시사업을 공익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하므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르면 기타사업이 아닌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합니다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Q12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하는 것이란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나요?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과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재원으로서 공익법인이 이를 임의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Q13

직접 공익목적사업은 정관상 사업만 가능한가요?

“직접 공익목적사업”은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어도 공익목적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 전시사업을 공익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하므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르면 기타사업이 아닌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합니다.

Q14

설립 당시 기본재산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경우,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배당)소득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현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괄호, 기본통칙 48-38·…2
재산세과-429(2012.11.30.), 법령해석과-667(2021.02.26.)

Q15

기부금으로 다른 공익법인에 자산을 구매해서 줄 경우,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나요?

출연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



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Q16 출연받은 재산으로 가산세 납부 시 출연재산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7호, 공익중소법인지원팀-951(2021.12.22.)

Q17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일부터 3년이 지나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로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즉시 과세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서일46014-10322(2002.03.15.)

Q18 출연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몇 % 이상 사용해야 하나요?

출연받은 재산은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으로 전부 사용하여야 하고, 3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Q19 출연재산 보고서상 [2. 자산보유현황] 작성 시 실제 취득가액과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금액 중 어느 것을 작성해야 하나요?

자산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Q20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시 법인세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공익목적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으로 하면 되나요?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의 [3. 수익원천별 수익·비용 현황] 작성 시 법인세비용은 비용에 포함하지 않으며, 공익목적사업에서 발생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환입은 ㉞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환입(전입)에 작성하면 됩니다.

Q21

출연재산보고서상 [3. 수익원천별 수익·비용현황] ㉔ 공익목적사업은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해당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익금액과 비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Q22

출연재산보고서상 [3. 수익원천별 수익·비용현황]에서 이자수익은 운영성과표대로 작성하면 되나요?

운영성과표 기준으로 이자수익을 작성하면 됩니다.

Q23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 수입금액도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Q24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임차료, 세무 확인, 직원 인건비 등으로 경비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직접적인 경비 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Q25 "출연재산 사용계획"이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등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전액 직접 공익 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년 이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①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이 인정한 경우
- ②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따라서 공익법인등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용도, 사용시작일, 사용 종료일 및 사용 금액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2020.12.20.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3조
- 2021.2.17.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제1항

Q26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에서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사용시작일과 사용종료일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사용계획 기간을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 10억원을 '23.3.1. 출연받아 '24.2.28.까지 장학금 지급에 사용할 계획인 경우, 사용시작일은 '23.3.1., 사용종료일은 '24.2.28.로 입력하면 됩니다.

단, 사용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출연재산은 출연받은 날을 사용 시작일로하여 3년이 되는 날을 사용종료일로 입력하고, 운용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날을 사용시작일로, 다음 사업연도 12.31.을 사용종료일로 입력하면 됩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Q27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작성 시 직전 사업연도에 사용 완료된 재산을 제외하고 작성해도 되나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Q28 출연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토지를 출연받아 그 토지 위에 예배당을 건축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예배당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한 때에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Q29 사용명세서에 출연받은 재산 중 소액 기부금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1개 사업연도 중 개인별(법인 제외)로 50만원 미만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소액 출연재산을 합산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Q30 운용비의 재원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작성하나요?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구분에 의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출연재산 매각금액, 출연받은 재산, 기타재산’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Q31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나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이란 ‘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한 총 매각대금에서 재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차감한 것’을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30%, 2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 등이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9. 2. 12.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7·1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2019.2.12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Q3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만기가 3개월인 정기에금에 예치할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6개월 이상의 정기에금(수익용 자산)에 예치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33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납입한 정기예금을 해지 후 재예치한 경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에 기재하나요?**

출연재산 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예치한 정기예금을 해지 후 재예치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사용명세서에 재예치 내역을 기재하고,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에 이자소득과 그 사용 내역을 작성하면 됩니다.

Q34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작성 시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대신 공익법인의 사업자번호를 작성해도 되나요?**

공익법인의 사업자번호가 아닌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번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Q35

운용소득과 법인세 신고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다르나요?

운용소득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 금액(「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액과 차감액을 통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운용소득과 법인세 신고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Q36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나요?**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인 운용소득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합니다.

운용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22. 1. 1. 전 개시한 사업연도까지 70%(성실공익법인 80%) 적용

다만,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6항
 기본통칙 48-38···3 기본통칙 48-38···3 1호, 3호
 2021.2.17.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

Q37 출연받은 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를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되나요?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합니다.

Q38 운용소득의 80%를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그 외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9 출연재산에서 이자 수입이 발생한 경우, 운용소득인가요?

이자 금액과 상관없이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 수입은 운용소득이며,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보통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40 공익법인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이자, 임대소득 등)을 1년 이내 8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 운용소득으로 2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해도 되나요?

운용소득을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 이상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실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5호, 기본통칙 48-38···3 3호
 서면4팀-1899(2006.06.21.)

Q41 운용소득인 이자수익 중 미수이자도 포함된 경우, 사용기준액(80%) 계산 시 미수이자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미수이자를 제외한 이자수익의 80%를 사용기준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Q42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작성 시 개별 수혜자에게 지출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개별 수혜자에게 100만원 미만으로 지출한 내역은 대표 수혜자를 적고 합계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Q43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작성 시 운영경비인 인건비로 지출한 경우, 주민등록 번호를 대표자 1인의 정보로 작성해도 되나요?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운영경비인 인건비의 경우 직원 외 00명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Q44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이 운용소득 70%에서 80%로 바뀌는 규정의 적용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21.2.17. 개정되어 부칙1조<제31446호, 2021.2.17.>에서 운용소득 사용기준이 80%로 변경되는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2021년 귀속 운용소득을 2022년에 사용할 때부터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Q45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작성할 때,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매입한 주식도 작성해야 하나요?

위탁 매입한 주식 보유 지분에 대해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나, 펀드 상품인 경우에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Q46 '이사 등 선임명세서'에 감사도 작성해야 하나요?

감사도 임원에 해당하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등기된 이사 명세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연도 중 취임, 해임 이력이 있는 이사와 임원도 작성하면 됩니다.

5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Q1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은?**

모든 공익법인등(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은 결산서류 등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종교단체는 표준공시 대상입니다.

- ①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 ②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
- ③ '96.12.31. 당시 특정주식 5%를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으로서 현재까지 해당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Q2 회비수익이란?

회비는 특정한 요건(회원)을 만족하는 대상으로부터 받는 수익이며 납부에 따른 회원의 혜택이 있거나, 정관이나 회칙에 의해 납부가 강제됩니다. 그러나,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 않으면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기부금수익으로 인식합니다.(공익법인 회계기준 실무지침서 참고)

Q3 주석이란?

주석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와 함께 재무제표의 하나로 규정하



고 있는 것으로,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에 대한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표시할 수 없는 회계사건 등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Q4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으로 국가지자체 보조금만 있는 경우, 결산서류 공시 대상에 해당하나요?

국가·지자체 출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출연재산보고 의무는 없으나, 결산서류 공시 의무 대상에는 해당합니다.

Q5 전년도 공시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재공시 하지 않고 당해연도 공시할 때 전기금액만 수정해도 되나요?

전기 공시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오류가 있는 사업연도 공시분을 수정하여 재공시하여야 합니다.

Q6 소규모 공익법정도 다른 공익법인과 동일하게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하나요?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별지 제31호의2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2항

Q7 총 출연재산가액의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총 출연재산가액은 재산출연일 현재(기부 당일)를 기준으로 공익법인이 설립시부터 출연 받은 총액을 의미합니다.

Q8 간편서식 작성 대상 법인이 표준서식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간편서식 공시 대상인 경우에도 표준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Q9 간편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운영성과표·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간편서식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운영성과표나 재무상태표와 같은 첨부서류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Q10 간편서식으로 공시한 공익법인등이 기부금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간편서식으로 공시한 공익법인등이 기부금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해당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편서식 대상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표준서식과 함께 기부금 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공시한 경우에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11 결산서류는 어떻게 공시해야 하나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무 업무 가이드 맵(Map) > 공익법인 종합안내 > 공시/공개 등록> 결산서류 공시 등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4항

Q12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이 미공시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가산세(자산총액의 0.5%)를 부과합니다.

다만, 간편서식 대상 공익법인등이 '22.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공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2항, 제78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5항, 제80조 제16항



조심-2021-광-5528(2022.05.04.), 조심-2021-인-3059(2021.11.26.)

Q13

결산서류 공시 서식에서 [1. 기본사항]의 ⑰고용직원 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⑰고용직원 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적으며, 이는 본지점을 포함한 전체 직원 수를 기준으로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사업연도 월 수”로 계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Q14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나, 기본순자산으로 처리한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에 어떻게 작성하나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작성시 기부금 수입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을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본순자산 증가로 직접 반영한 경우, 이 순자산 증가액은 월별 기부금품 수입에 포함하여 작성 후, 기본순자산 편입액으로 별도 기재하여 차감합니다.

∞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별지 제31호 서식 부표1)의 작성방법

Q15

기부금품(후원금) 수입을 해당 사업연도에 모두 사용한 경우, 기부금 수입과 차기 이월금을 0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명세서’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Q16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에서 [2.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는 기부금으로 지출된 것만 작성하나요?

기부금을 재원으로 직접 지출된 금액을 작성하며, 보조금·운용소득 등에 대한 지출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Q17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작성 시 전년도 미지급비용과 당해연도 미지급비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전년도 미지급액은 포함하고 당해연도 미지급액은 제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Q18

여러 수혜자에게 지출한 경우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지급처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지급처별 연간 수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를 적습니다.

예) 대표 지급처가 홍길동인 경우 '홍길동 외 0인'으로 작성

∞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별지 제31호 서식 부표1)의 작성방법

Q19

기부금품을 자산취득이나 단체 운영경비에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연간 100만원 이상 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 자산별로 작성합니다. 취득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산구분별(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등)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체 운영경비에 지출하는 경우 사업연도 기간 지급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100만원 이상 시 단체 운영경비에 지출하는 경우, 지급처 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직원 갑 외 2명에게 인건비 총 72백만원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 수 3명, 지출액 72백만원' 기재

∞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별지 제31호 서식 부표1)의 작성방법

Q20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작성 시 수혜자에게 직접 지출한 금액 외에 회의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어떻게 작성하나요?

기부금을 운영경비에 지출한 경우, 지급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하고 회의비·인건비·지급수수료 등으로 지출 목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Q21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를 공시할 때,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상 출연자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해당 사업연도 출연자가 없는 경우에는 [1. 출연자(기부자)]는 공란으로 하면 되나, 설립 시 출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칸은 작성하여야 합니다.

Q22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상 출연자는 후원자를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출연일 현재 총 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출연한 자는 제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Q23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작성 시 ㉔직접공익목적사용금액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작성하면 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수익사업사용금액'란에 작성하면 됩니다.

Q24 모든 공익법인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및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익법인등은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은 의료기관회계준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을 적용하며,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별도의 회계기준이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우선하여 해당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6 제2항
공익법인회계기준 제6조 제2항

Q25 현물인 기부물품을 받고 지출한 경우 재무제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운영성과표의 사업비용, 분배비용 계정에 해당하므로, 현물인 기부물품이 수혜자 등에게 지출된 경우 분배비용 계정에 기재하면 됩니다.

Q26 홈택스에서 공시서류 작성 시 ‘출연보고서 불러오기’ 기능은 대리인이 신고한 출연재산보고서 내용 불러오기가 가능한가요?

대리인이 작성한 출연재산보고 내용도 공시 작성 시 불러오기 가능합니다.

6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Q1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 (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Q2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만 있는 공익법인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인가요?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 여부 판단 시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가액을 말하며,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지 판단할 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국고보조금을 포함하며,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지 판단할 때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재산세과-60(2013.02.25.), 공익중소법인지원팀-391(2022.04.19.)

Q3

**공익법인등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도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201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도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 2016.12.20.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0조

Q4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대상 기준은 수익사업의 재무제표
기준인가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합한 전체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Q5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가 있나요?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설립자 또는 임직원
2. 출연자 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친족 등), 제2호(사용인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
3. 출연자 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회사를 말함)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
4.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제1호(임직원은 제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가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법령해석과-4337(2020.12.30.), 공익중소법인지원팀-1822(2022.12.08.)

Q6 공익법인등의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로부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도 가능한지요?

공익법인등의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와 그가 속한 법인에 소속된 다른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세무확인 가능 외부전문가의 범위에서 배제대상이 아닙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865(2023.07.13.)

Q7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수행을 학교법인 별로 하지 않고 학교법인 소속 학교별로 해도 되나요?

학교법인에 소속된 개별 학교는 학교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이며, 학교법인 별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를 수행합니다.

∞ 공익중소법인지원팀-281(2021.06.07.)

7 외부 회계감사 의무

Q1 모든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래 1, 2, 3번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1.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아래 1), 2), 3)번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



-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
- 2)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
- 3) 출연받은 자산가액이 20억원 미만

-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
 - 3.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
-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종교단체, 학교법인은 외부 회계감사 대상입니다.
- ①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 ②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자산가액의 30%(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
 - ③ '96.12.31. 당시 특정주식 5%를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으로서 현재까지 해당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같은 법 제43조 제3항·제4항

Q2

'23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외부 회계감사 대상 기준에 해당하면, '23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직전 사업연도인 '23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이라면 '23 사업연도가 아닌 '24 사업연도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Q3

의료법인도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법인인 경우, 의료법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면 됩니다.

Q4

직전 사업연도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종교법인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종교법인은 아래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부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 ②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
- ③ '96.12.31. 당시 특정주식 5%를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으로서 현재까지 해당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

Q5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 판단 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 의무 제외대상인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20억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4항

Q6

사회복지법인이 구 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를 설립·인가받아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舊「교육법」(1997.12.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하면서 그 외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Q7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를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홈택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할 때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무 업무 가이드 맵(Map) > 공익법인 종합안내 > 공시/공개 등록 > 결산서류 공시 등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제7항

Q8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도 내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내부감사보고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한 명	4월 11일(금)	4월 14일(월)	4월 15일(화)	4월 16일(수)	4월 17일(목)
미 달 러 (USD)	1458.50	1450.80	1427.40	1423.30	1427.40
일 본 엔 (JPY)	1012.07	1009.74	996.41	993.89	1006.42
영 국 파 운 드 (GBP)	1891.60	1897.43	1880.67	1882.67	1889.59
캐 나 다 달 러 (CAD)	1044.17	1045.47	1027.13	1019.41	1029.91
홍 콩 달 러 (HKD)	187.98	187.07	184.06	183.48	183.89
위 안 화 (CNH)	198.19	198.29	195.44	194.40	194.77
유 로 화 (EUR)	1635.56	1644.41	1619.31	1606.48	1626.88
호 주 달 러 (AUD)	907.11	911.39	902.47	900.66	909.90
싱 가 폴 달 러 (SGD)	1096.41	1099.05	1084.65	1079.24	1089.29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26.43	328.05	323.31	322.56	323.64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지속 완화

- 행정안전부, 2025. 4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22일간 입법예고(4.15.-5.7.)
- 2023년 이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3억이하43%, 3억초과 6억이하44%, 6억초과45%)를 올해도 연장 적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4월 15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43%~45%)를 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 ('23~'24년) 3억 이하 43% /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 ※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 동 조치로 인해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 2천 원의 재산세

가 부과된다.

< 분리과세 대상 추가·확대 >

-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 감소지역(89개) 소재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년~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해남영암, 태안 기업도시 해당
 -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부담이 완화된다.
 - 이는 조세전문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책적 보호·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다.
 -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분리과세 적용 후 일몰 도래 시, 지원효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4월 15일(화)부터 5월 7일(수)까지 22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5월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이에 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지방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요약)

제목	조문	주요내용	비고
①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 분리과세 신설	영 제102조 제8항	○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5년간('25~'29년) 분리과세 적용	※'24년 분리과세 타당성 평가결과 반영
② 재산세 비과세 대상 범위 명확화	영 제108조 제3항	○ 재산세 비과세 대상은 '행정관청과'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비과세 요건 명확화	
③ '25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설정	영 제109조 제1항	○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국세청, 대한해협 너머 체납 세금 받아낸다

- 국세청, 2025. 4

- 한·일 국세청장, 조세정의의 위한 촘촘한 그물망 징수공조 체계 구축
- 국세청, 제29차 한·일 국세청장회의 개최하여 양국 간 세정협력 기조 이어나가

-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4월 15일(화)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청장 오쿠 다쓰오)과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양국 국세청장은 ① 국세행정 주요 전략 ② 고액 체납자 대응 ③ 신종금융자산 과세 ④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하고
 -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나가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한·일 간 국제공조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
- 한국과 일본은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29차 국세청장회의를 맞았습니다.
 -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관계도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일본 : 재외국민 2위(41만명), 진출법인 4위(4,747개) ('24년12월 기준)
 - * 한국의 대일 교역액 775.1억불, 우리나라의 수출 6위, 수입 3위 국가

-
- 한·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주요 세정현안을 공유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당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양 청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어려운 세입환경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 강 청장은 한국의「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했습니다.
 - 이에 더해 강 청장은 직접 부제를 달아 발표했던 「스드·메의 문단속」보도자료*와 신카이 마코토(新海誠) 감독이 이를 X(구 트위터)에 공유한 내용을 소개했고 일본 국



세청으로부터 호응과 함께 흥미롭다는 반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 2025. 2. 11, 국세청, “너무 비싸 포기합니다. 결혼·출산·육아, 2030 올리는 스프레드, 산후조리원, 영 어유치원 세무조사”

□ 양국 청장은 한국의 「고액 상속 채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하여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 등 세무애로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

* 상호합의 절차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

○ 역외탈세 정보 제공 등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에 크게 기여한 양 과세당국의 유공자들에 대한 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상호 교환하였습니다.

* 정보교환 : 조세의 부과, 징수, 소송, 형사 소추 등을 위해 필요한 조세정보를 국가 간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교환하는 제도

□ 이번 회의에서 한일 국세청장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채납에 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하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 OECD가 주도하는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 및 징수 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 협약으로, 정보교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공조 방식 추가

** 징수공조 : 채납자에 대한 해외 재산 조회,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해외 국세청이 대신 수행하여, 채납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

○ 한일 간의 긴밀해진 공조 관계는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10월)와 OECD 국세청장회의(11월)에서의 양국 청장 간 회담과 이후 개최된 두 차례 ‘한·일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공조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입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과세당국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공조를 긴밀히 할 뿐만 아니라, 활발한 세정의교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